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문혁 의원)

의안 번호	351
----------	-----

발의연월일: 2021년 05월 03일

발 의 자: 장문혁 의원

찬 성 자: 전수일, 이주용, 심현정의원

1. 제안이유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한 자체 계획 수립 의무 (안 제3조)
- 나.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안 제4조)
- 다. 희망택시 운행방법 및 이용방법(안 제5조, 제6조)
- 라. 지원결정 및 비용지급(안 제7조)
- 마.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의 지원금 지급 중단 등(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자치법」
- 나. 예산조치 : 붙임 참조(비용추계서 첨부)
- 다. 입법예고 : 2021. 04. 08. ~ 2021. 04. 28.(20일간), 제출된 의견 없음
- 라. 집행기관의견수렴 : 2021. 03. 26. ~ 2021. 04. 05., 아래 참조

<p>조례안</p>	<p>제4조(이용대상자)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는 평창군에 주소를 둔 주민 중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65세 이상인 사람과 임산부 및 통학생을 우선한다.</p> <p>제7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 ① 운송사업자는 주민들이 이용한 희망택시 전산 정산 시스템을 근거로 희망택시 탑승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군수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손실보상 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p>
<p>제출의견</p>	<p>제4조(이용대상자) ①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는 평창군에 주소를 둔 주민 중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u>제1항을 충족하는 주민 중 차량 미소유가구, 차량 소유가구의 경우에는 세대원수 2인 이상 가구 기준 차량 1대 보유 및 학생(초, 중, 고)이 있는 가구로 한다. 단, 이용이 필요한 객관적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소명에 따라 이용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u></p> <p>제7조 (지원결정 및 비용지급) ① 군수는 사업자에게 운행요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그 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운행요금의 적정성,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u>③ 군수는 운행택시별로 정산정보시스템 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운행요금에서 이용자에게 지불받은 이용요금을 제외한 비용을 협약에 따라 매월 정산하여 지급한다.</u> <u>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u></p>
<p>의회의견</p>	<p style="text-align: center;">[부분 수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희망택시 이용대상자를 상세화한 내용은 구체적이고 변동적 사항으로 조례로 규정하기 부적절 함이 있음. · 집행부 제시의견에는 운송사업자가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경우에 비용산정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비용산정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와 운송사업자 간에 협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함.

평창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망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금의 일부를 공공재정에서 보전받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2.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마을을 말한다.
3. “운송사업자”란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희망택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운영계획에는 운행지역, 운행방법, 운행요금 청구 및 정산,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4조(이용대상자)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는 평창군에 주소를 둔 주민 중 희

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운행방법 등) 희망택시 운행시간, 운행구간 및 운행횟수와 재정지원 한도 등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6조(이용방법 등) ①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가 희망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운송사업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희망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이 곤란할 경우 사유와 이용 가능 시간대를 신청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희망택시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요금을 부담해야 하며, 군수는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 및 비용지급) ① 군수는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요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그 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확인한 운행요금의 적정성, 지원 가능한 예산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비용 산정은 운송사업자가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경우에 발생한 비용에서 운송수입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와 운송사업자 간에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희망택시 이용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 및 운송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비용 지원중단 등) ① 군수는 교통 접근성 개선 및 마을버스 운행 등으로 희망택시 운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기존에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으며,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희망택시 이용자 부담요금(제6조제2항 관련)

대상	이용자(탑승자) 부담요금
제4조 대상자	◦ 1,400원(4인까지 이용 가능)

[관련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8., 2015. 6. 22., 2017. 12. 26.>

1.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 다. 생활이 곤궁(困窮)한 자의 보호 및 지원
- 라.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마.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 자.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관련조문 : 조례안 제7조(지원결정 및 비용지급)
- 비용발생 요인 : 운행손실보상금, 정산시스템 사용료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희망택시 운영의 지속적 추진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예산	비 고
계	502,700	
희망택시 손실보상금 지급	495,100	
희망택시 정산시스템 사용료	3,600	
희망택시 카드 제작	4,000	

다. 재원조달 방안 : 해당년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국비, 군비)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안전교통과장 심재호
연락처	(033) 330 - 2019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해	당	없	음		
세 출		502,700	502,700	502,700	502,700	502,700	2,513,500
손실보상금 지급		495,100	495,100	495,100	495,100	495,100	2,475,500
정산시스템 사용료		3,600	3,600	3,600	3,600	3,600	18,000
카드제작		4,000	4,000	4,000	4,000	4,000	20,000
재원 조달		502,700	502,700	502,700	502,700	502,700	2,513,500
의존 재원	소 계	502,700	502,700	502,700	502,700	502,700	2,513,500
	국비	87,400	87,400	87,400	87,400	87,400	437,000
	도비	124,600	124,600	124,600	124,600	124,600	623,000
	군비	290,700	290,700	290,700	290,700	290,700	1,453,000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